

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4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1월 일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1. 개정이유

-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상향 조정 및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 등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 시설 노후화 등 차량 대형화로 인하여 미 이용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용율을 높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범위의 주차면수 감면을 50퍼센트 범위의 주차 면수 감면으로 상향 조정(안 제 17조 제2항)
- 나.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후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하여야하나 완화 된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으로 재설치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(안 제17조 제4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

- 가. 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13(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)
-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2조의5(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)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년 11월 17일 ~ 11월 23일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, 제1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장치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 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. 를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장치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. 로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치를 재설치(리모델링 포함)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17조(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19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③ (삭제)</p> <p>④ (신설)</p>	<p>제17조(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법 제19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2항에 따라 철거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주식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으로 재설치(리모델링 포함)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.</p>

□ 「주차장법」

제19조의13(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)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.

1.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(老朽)·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(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)

2.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

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,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.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⑥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.

□ 「주차장법 시행령」

제12조의5(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) ①법 제19조의13 제1항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“이란 5년을 말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.